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9. 12.(금)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기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709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2. 제안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증가와 함께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 및 견인 비용 부과 기준 등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범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안전교육 항목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규정 강화(안 제9조)

4.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방치된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달성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6건이며, 경기 2천594건, 서울 1천354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총 6명이며, 대구시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시 195건과 비교하면 대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고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 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교통 안전 문제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와 함께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단속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처리의 근거를 기존 「도로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 외에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추가함으로써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 및 조문 구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바, 당초 무단방치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대여사업자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비용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해당 조문	제출의견 반영 해당 조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한 경우 그 대여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한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자칫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의 관리와 교통안전, 그리고 ‘군민의 안전’이라는 가치 아래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단속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 가상주차구역의 설치 등 기반 시설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6. 참고자료

○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별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견인료	보관료	
개인형 이동장치	30,000원	30분당	500원
		1일(최대)	15,000원

○ 무단방치 된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료 및 보관료 현황

구분	견인료	보관료
서울	40,000	700원/30분 (1회 최대 50만원)
부산	40,000	700원/30분 (일 최대 15,000원)
대구	30,000	500원/30분 (일 최대 15,000원)
인천	20,000	1,000원/30분 (일 최대 10,000원)
대전	30,000(5km이내), 추가 1,000/km	400원/10분 (일 최대 12,000원)
광주	15,000	500원/10분 (일 최대 12,000원)
울산	30,000(5km이내), 추가 1,000/km	500원/30분 (일 최대 10,000원)

○ 공유 PM 현황

구 분	2023. 12월	2024년 12월	비 고
공유업체 보유현황	9,430대	11,520대	22% 증가
방치처리건 수	22,747건	21,335건	5% 감소
사고건수	145건	134건	8% 감소

○ 공유 PM 업체 보유 현황

구분	계	빔	쌍쌍	지쿠	Deer	플라워로드	알파카	스윙
전체	11,520	4,200	1,640	2,965	1,935	250	230	300
중구	576	300	140	136		-	-	
동구	1,162	300	400	312		150	-	
서구	285	150	50	85			-	
남구	454	200	100	154			-	
북구	1,913	950	140	398	125		-	300
수성구	3,474	750	530	522	1,572	100	-	-
달서구	2,725	1,250	-	1,237	238	-	-	-
달성군	931	300	280	121	-	-	230	-

○ 개인형 이동장치(PM) 거치대 현황(2025. 3월 기준)

구 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사구군	67개소	0	0	0	10	31	19	7	0
	984대	0	0	0	71	662	90	161	0
민간 (PM 스테이션)	91개소	0	0	0	0	0	45	46	0
	420대	0	0	0	0	0	180	240	0
합계	158개소	0	0	0	10	31	64	53	0
	1,404대	0	0	0	71	662	270	401	0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710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2. 제안사유

- 관리·운영 조례 중 도동지구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상한액 산정 후 시행규칙에서 이용성, 관리성에 근거한 사용료를 명시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도동지구의 이용자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명칭 변경,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달성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도동지구 각 시설물의 명칭을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현 행	개정안
도동유교문화관	⇒ 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
서원문화관	⇒ 서원문화관
복합문화관	⇒ 사랑방
서원스тей	⇒ 숙박동(매, 난, 국, 죽)
공동취사장	⇒ 휴게실
린넨실	⇒ 화장실
숙직실	⇒ 관리사무실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시설
수목	⇒ 수목
조형물	⇒ 조형물

○ 이는 ‘서원스тей’란 용어가 현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에서 진행되는 숙박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일컫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어 한옥형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군 시설과는 혼선의 여지가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명칭 변경으로 서비스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명확하겠으나, 감성적인 명칭으로 관광객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최근의 관광 경향과 달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현행 조례 별표2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별표2의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서는 사용료의 최고 상한 기준을 정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군민과 이용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표 2의 사용료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최고 상한선기준이며, 집행기관에서 시행 예정인 규칙의 별표 사용료를 보면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별표]

시설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시설명	면적(m ²)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기준인 원		
숙박동 (매난국죽)	대나무	36	1박	100,000	90,000	2인	방 1개
	국화,매화	38		140,000	100,000	4인	방 2개
	난초	51		180,000	130,000	6인	
구 분	사 용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부대 시설	사랑방	오전	9:00 ~ 12:00	20,000	시설 일부 사용 시 전부 사용 간주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60,000			
	서원문화관	1일	9:00 ~ 22:00	90,000			

○ 각종체험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그 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시설/프로그램 이용시간, 물가의 정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익 및 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성수기”란 1년 중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날을 말한다.

6. 참고자료

○ 공주시 한옥마을 시설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수용인원		요 금		방수	비 고
		정원	최대	주 중	주 말		
초가형	이인관 의당관 탄천관	2명	3명	160,000	190,000	1	구들
전통형	농본관 신토관 불이관	2명	3명	180,000	240,000	1	구들
일반형	계룡관2	2명	2명	110,000	140,000	1	구들
	계룡관1	2명	3명	130,000	160,000	1	구들
	사곡관	2명	3명	130,000	160,000	1	전기난방
	우성관	8명	9명	230,000	290,000	3	전기난방
고급형	유구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반포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정안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신평관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양반형	행랑채	2명	2명	50,000	70,000	1	구들
	별 채	4명	5명	190,000	250,000	2	구들
	사랑채	4명	5명	200,000	260,000	2	구들
	안 채	8명	9명	230,000	290,000	3	구들

○ 강릉시 한옥마을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유형	객실 단위면적		최대 수용 인원 (명)	동수	객실 수	총 수용 인원 (명)	객실 당 요금			비고
	m ²	평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보급형A	16.20	4.90	3	1	2	6	65,000	75,000	90,000	독서관
보급형B	16.56	5.01	3	1	3	9	65,000	75,000	90,000	독서관
일반형A	32.40	9.80	4	6	6	24	120,000	140,000	160,000	입서관
일반형A (누마루형)	39.60	12.00	4		6	24	140,000	160,000	190,000	입서관
고급형 (단층)	52.20	15.79	6	3	3	18	170,000	200,000	240,000	지서관
고급형 (복층)	52.20	15.79	6	3	3	18	170,000	200,000	240,000	지서관
고급형 (독채)	50.40	15.25	6	3	3	18	170,000	200,000	240,000	지서관
최고급형	65.52	19.82	7	3	3	21	230,000	270,000	320,000	접인관
VIP형	74.52	22.54	8	1	1	8	250,000	300,000	360,000	사친관
미래형 실험한옥	A	57.96	17.53	1	1	6	200,000	240,000	290,000	거가관
	B	23.04	6.97		3	1	3	80,000	95,000	

유형	객실 단위면적		최대 수용 인원 (명)	동수	객실 수	총 수용 인원 (명)	객실 당 요금			비고
	m ²	평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일반형B	32.40	9.80	4	2	4	16	120,000	140,000	160,000	세심재
일반형C (일반형)	32.40	9.80	4	3	3	12	120,000	140,000	160,000	거경재
일반형C (누마루형)	39.60	12.00	4		3	12	140,000	160,000	190,000	거경재
일반형D (일반형)	32.40	9.80	4	2	2	8	120,000	140,000	160,000	맹성재
일반형D (누마루형)	39.96	12.09	4		2	8	140,000	160,000	190,000	맹성재
일반형 (장애인)	32.40	9.80	4	1	1	4	120,000	140,000	160,000	애일재
최고급형	67.05	20.28	7	1	1	7	230,000	270,000	320,000	구용재
고급형 (독채)	50.40	15.25	6	3	3	18	170,000	200,000	240,000	구사재